한서대학교

2021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특별전형 모집요강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구 분	모 집 학 과		학과정원	모 집 인 원
항공융합학부	글로벌언어협력학과	영어전공	86	9명
		중국전공		
		일본전공		
		국제협력전공		
	공항행정학과	홍보전공	50	
		행정전공		
	항공보안학과		22	
	항공컴퓨터전공		20	
	인프라시스템학과	항공전기전공	95	
		항공환경전공		
		공항토목전공		
		공항건축전공		
	항공신소재화공학과	신소재전공	50	
		화학공학전공		
항공학부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55	
	항공기계정비학과		70	
	항공전자공학과		40	
	무인항공기학과	무인항공기시스템전공	50	
		드론응용전공		
	항공산업공학과		25	
	항공교통물류학과	항공교통학전공	60	
		물류학전공		
보건학부	의료복지공학과		25	
	물리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간호학과		60	
	치위생학과		40	
	보건상담복지학과		70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41	
	바이오식품의과학과		45	
디자인 · 엔터미디어학부	디자인융합학과	의상디자인전공	125	
		시각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학과		35	
	영화영상학과		20	
	문화재보존학과		25	
	실용음악과		15	
	미디어문예창작학과		25	
융합교양학부	호텔카지노관광학과		30	
해양 · 스포츠학부	해양바이오수산생명의학과		20	
	경호비서학과		35	
	레저해양스포츠학과		60	
항공학부	항공관광학과(승무원양성)		70	5명
	항공운항학과(조종사양성)		70	2명
	헬리콥터조종학과		25	2명
합 계			1,579	18명

※ 재외국민 중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위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모집인원 제한없이 정원외로 모집합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20. 7. 20(월) ~ 24(금)	인터넷 원서접수 : 진학 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마감일 17:00까지
서류제출	2020. 7. 20(월) ~ 31(금)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면접고사	2020. 8. 21(금)	우리 대학교 지정장소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20. 12. 04(금)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http://helper.hanseo.ac.kr
등록기간	2020. 12. 28(월) ~ 30(수)	전국 국민은행	
충원합격자 발표	2021. 01. 04(월)까지	개별통보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2020. 12. 30(수) ~ 2021. 01. 05(화)	전국 국민은행	
등록금 납부 기간	2021년 1~2월 중	전국 국민은행	개별 안내

※ 면접대상자는 영주교포 자녀 지원자, 해외근무 재외국민 지원자, 기타 재외국민 지원자(자영업, 현지법인), 항공관광학과 지원자(모든 전형)

※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는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1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화이트카드) 1부)를 10월 30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증명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신체검사에 한하여 인정·적용합니다.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상에 “적합” 판정만 인정·적용합니다.

3. 재외국민(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지원자격

※ 기본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가. 지원자격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rowspan="3">지 원 자 격</th><th colspan="5">해외 재학 · 체류 기간</th><th rowspan="3">비 고</th></tr>
<tr><th colspan="2">학 생</th><th colspan="2">보호자</th><th>배우자</th></tr>
<tr><th>재학</th><th>체류</th><th>근무</th><th>체류</th><th>체류</th></tr>
<tr><td>영주교포 자녀</td><td>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td><td>3년</td><td>3년</td><td>3년</td><td>3년</td><td>3년</td><td></td></tr>
<tr><td>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td><td rowspan="3">외국에서 3년 이상의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체류한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td><td rowspan="3">3년</td><td rowspan="3">3년</td><td rowspan="3">3년</td><td rowspan="3">3년</td><td rowspan="3">3년</td><td rowspan="3"></td></tr>
<tr><td>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td></tr>
<tr><td>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td></tr>
<tr><td>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td><td>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3년 이상 체류(근무)하고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교육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td><td>3년</td><td>3년</td><td>3년</td><td>3년</td><td>3년</td><td></td></tr>
<tr><td>자영업 현지법인</td><td>부모 및 학생 모두가 적법한 절차로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근무)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td><td>3년</td><td>3년</td><td>3년</td><td>3년</td><td>3년</td><td></td></tr>
</table>

나. 세부 지원 자격 기준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 분	내 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4.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이수자)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비 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자

나. 세부 지원 자격 기준

□ 재학기간의 기준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여야 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비 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자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영주교포 자녀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⑥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⑧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⑨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⑩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필요시 제출서류를 추가요청 할 수 있으며,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해외근무 재외국민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⑥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⑨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⑩ 해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상사직원 자녀) ⑪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⑫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자영업 현지법인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⑥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⑨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⑩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현지법인 근로자, 자영업자 제출) ⑪ 사업소득세 납입증명서(사업체명 명시, 지원자격 기간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⑫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납부이력(현지법인 근로자) ⑬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⑥ 재외국민 등록부등본(학생) ⑦ 학제 확인서(해당국가의 학제가 12년 학제가 아닌 경우) ⑧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부 ⑨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필요시 제출서류를 추가요청 할 수 있으며,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북한이탈 주민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⑤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 외국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및 “재외국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제출(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로 “재외국교육기관확인서” 대체가 가능/재외교육기관확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 국가 제출 제외)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한국어) 원본제출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제 확인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 · 공증 미비서류는 서류 미제출 불합격 처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7. 전형 방법 및 반영 비율

구 분	모집단위	반영비율(%)
		면접
영주교포 자녀	전 학과	100
해외근무 재외국민		
자영업, 현지법인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항공관광학과	100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이수자 지원자(서류심사 합격자)는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모든 전형의 항공관광학과는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 모집인원 및 성적에 관계없이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면접고사

가. 기준 및 방법

면접 기준	평가 방법	비 고
인성 평가	다대다 구술면접	

나. 면접 복장은 일반 평상복 등 단정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다. 항공관광학과 면접 복장

· 상의 : 색상, 형태 등은 자유이나 목을 가리는 옷은 금지합니다.

· 하의 : 여자의 경우는 가능한 스커트 차림으로 무릎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타킹은 밝은 색 착용)

· 신발 : 슬리퍼를 착용하고 면접을 실시합니다.(슬리퍼는 학교 제공)

라. 면접고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대리응시자 또는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준비물 : 수험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9. 신체검사

가. 대상 :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전원

나. 대상 신체검사 :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다. 검사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별도의 지정병원 없음)

라. 검사 기간 : 2020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결과

마. 제출서류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1부,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증명서 1부

바. 제출 기한 : 2020년 10월 30일(금)까지 도착

사. 적용 기준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상에 “적합” 판정만 인정 · 적용

10. 선발기준

가. 면접성적순에 의해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연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원자격 미달자와 합격 범위에 포함된 자라 하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합니다.

12. 원서 및 전형료

가. 원서 : 무료

나. 전형료(수수료 포함)

-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 재외국민, 기타 재외국민 : 50,000원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 30,000원
- 모든 모집단위의 항공관광학과 : 50,000원

다.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1) 환불대상(불가항력적인 사유)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라)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환불 대상 제외

- 단순변심, 타 대학과의 전형일자 중복 등의 사유로 면접에 불참한 자
- 기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자

13. 원서접수 안내

접수기간	접수장소	연락처	비고
2020. 7. 20(월) ~ 24(금)	· 온라인 공통원서접수 http://www.jinhakapply.com	1544-7715	접수마감일 17:00까지
	· 방문접수(우리 대학교 입학관리처)	041-660-1020	

가. 전형료 결제

-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의 결제 방식을 따르고, 결제계좌(통장, 카드 등)에 전형료 및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 사항

- 최종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를 하고, 접수증 출력이 되었을 경우에만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전형료 결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전형료 결제 이전에 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나타나는 약관과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 문구를 확인하고, 접수 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자는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14. 등록 안내

가. 합격자 발표 및 예치금 납부 안내

1) 합격자 발표 : 2020. 12. 04(금)

2) 등록기간 : 2020. 12. 28(월) ~ 30(수)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포기 처리

3) 등록장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4) 합격통지서 및 예치금 고지서 : 입학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5) 잔여 등록금 납부 안내 : 2021년 1월 중 고지서 및 납부기간 개별 통보

6) 추가합격 발표 및 등록기간 : 2020. 12. 30(수)이후 예비순위에 따라 개별 유선 안내

15. 유의사항

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제출기간 내 본 대학교 입학관리처에 도착되어야 하며, 우편 접수자는 서류접수 여부를 본 대학교 입학관리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서류심사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려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등록자 중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2021년 3월 12일(금)까지, 졸업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입학관리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해당 국가 기관의 증명 서류도 가능).

바. 항공관광학과는 항공승무원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므로 각 항공사의 승무원 선발 기준(생년월일 등)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는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원본을 10월 30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1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화이트카드) 1부)

아. 항공학부, 항공융합학부의 일부 학과는 색맹, 색약인 경우 졸업 후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릅니다.

차. 지원을 위한 졸업자격 인정 기준 시점은 학기 개시 이전일(2021년 2월 28일)로 합니다.

카. 입학 후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16. 2021학년도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수험생 유의 사항

가.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의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3)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4)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5)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 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가능 합니다.
6)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포함)·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경찰대학,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7)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이중등록 금지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2)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 · 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처리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17. 입학문의

- 우편번호 : 31962
- 주　　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 전　　화 : (041) 660 - 1020 · 전　　송 : (041) 660 - 1024
- 입학홈페이지 : http://helper.hanseo.ac.kr